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추가함(안 제30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